

1. 개정이유

참전유공자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약제 비용이 지원됨에 따라, 약제비 비용 지급 신청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병원 약제 비용 지급 신청서(안 별지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'22년 소요예산 반영(4분기, 6,919백만원)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와 소요예산 관련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총리령 제 호

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별지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서식)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병원 약제비용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의2제3항

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7항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위탁병원 약제 비용 지급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
신청인	대상구분 [] 6·25참전유공자 [] 월남전참전유공자 [] 무공수훈자 [] 재일학동의용군인	보훈번호	
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지급방법	계좌입금 [] 수당입금계좌 [] 그 외 계좌	현금지급	[] 현금지급 ※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허용
	금융기관 계좌번호	예금주	
연간 지원액	대상별 연간지원액은 국가보훈처장이 고시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.		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의2 제3항 및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7항,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약제 비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 귀하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첨부서류	예금통장 사본(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하며, 수당입금계좌 외의 예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☞ 뒤쪽에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가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24조의2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2조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, 시중은행으로부터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 약제 비용 내역 확인 및 국가부담액 지급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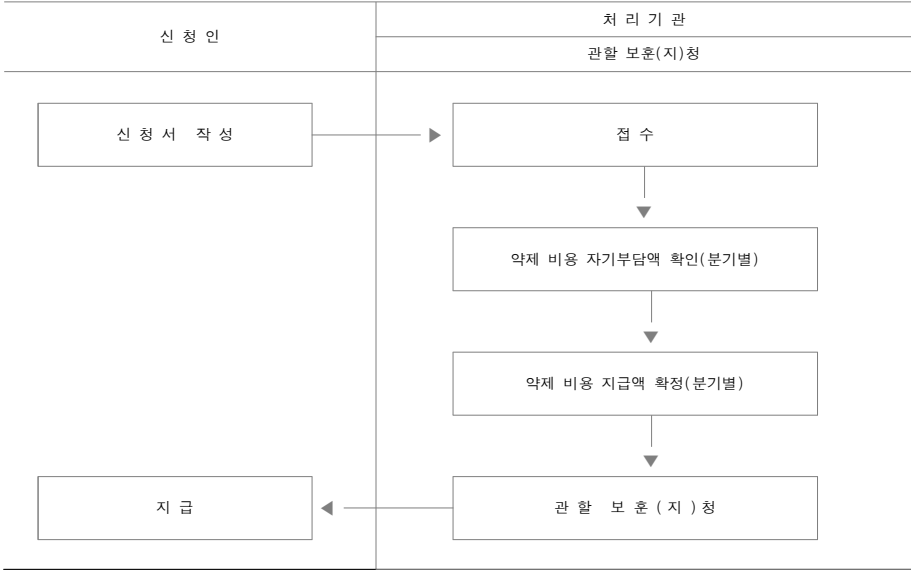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*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 []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유의사항

- 위탁병원 진료 후 발행되는 처방전에 따라 외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약제 비용만을 지원합니다.
- 대상별 연간 1인당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약제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, 당해연도 잔여 금액은 다음년도에 이월되지 않습니다.

확 인			
담당	주무	과장	(지)청장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응급진료 기간의 연장) ① (생 략)	제13조(응급진료 기간의 연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 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<u>별지 서</u> <u>식의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</u>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(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 의 만료일 전일까지를 말한다)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1</u> <u>호서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③ (현행과 같음) 제19조(서식) 다음 각 호의 규정 에 따른 위탁병원 약제비용 지 급신청서는 <u>별지 제2호서식으</u> <u>로 한다.</u>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 조의2제3항 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7항